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한만석 기획경제국장)

가. 개정이유

-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2021. 7. 27. 제정, 2022. 4. 28.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을 상위법 목적에 맞게 변경함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(안 제2조)
- 상생협약 권장 및 활성화구역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함(안 제3조)
- 상생협약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지정함(안 제6조)
-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범위를 규정함(안 제7조)
-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를 규정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통해 많은 상생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안전임을 검토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